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6선거구,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행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별표1]에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준공년도에 따라

20년에서 30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준공년도에 상관없이 모든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30년 이상이 되어 불필요한 [별표1]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이 층수와 무관하게 30년이던 것을

5층 이상과 4층 이하로 나누어

4층 이하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 선배 동료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단지 단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아파트에 비해

저층주거 밀집지역은 필지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4층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함으로써

노후·불량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